탄 원 서

피고인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사건	내란중요임무종사 등(상고심) / 상고심 번호·재판부 미확인
수신	대법원(배당 확인 전 수신 미확정) 귀중

존경하는 재판장님과 재판부 판사님들께.

1. 상고심에 대한 탄원 취지

공개보도에 따르면 2026년 10월 21일 서울고등법원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사건에서 1심 징역 25년을 파기하고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1] 이후 박성재 측과 특검 측이 모두 상고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3] 이는 확정판결이 아니며, 이 문서는 대법원 접수번호·담당 재판부·양측의 실제 상고이유서 전문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작성됐습니다. 따라서 존재가 확인되지 않은 상고이유를 새롭게 주장하거나 법원의 판단을 미리 정해 달라는 취지로 읽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2. 항소심 판단의 범위와 무죄 부분의 해석

항소심은 공소항목별로 서로 다른 판단을 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1] [2] [7] 일부 무죄로 알려진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사건 전체의 무죄나 나머지 유죄 부분에 대한 오류를 곧바로 뜻하지는 않습니다. 각 항목에 어떤 사실이 인정되고 어떤 법적 이유로 결론이 갈렸는지는 항소심 판결문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합동수사본부 관련 인력 지원이나 서울구치소 수용시설 관련 검토 등에 관한 보도상 요약을 판결문 전문과 동일시하지 않아 주십시오.

3. 상고심에서 다루는 쟁점의 한계

형사소송법 제383조는 상고이유를 법정 사유로 제한합니다. [4] 같은 조 제4호의 중대한 사실오인 또는 현저한 양형부당은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관한 규정이므로, 항소심 선고형이 징역 9년이라는 사실만으로 그 사유를 독립적으로 원용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위반 등 다른 상고이유가 있는지는 실제 상고이유서와 판결문을 근거로 검토할 문제입니다. 새로운 사실관계를 단정하는 주장보다 법률 판단의 구조와 논거를 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4. 내란 및 직권남용의 독립적 요건

형법 제87조의 내란 관련 책임과 제123조의 직권남용은 각기 다른 법률요건을 가집니다. [5] [6] 권한 행사 또는 지시 전달이라는 외형만으로 둘의 성립 여부를 함께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항소심에서 인정한 구체적 행위, 국헌문란 목적에 관한 인식, 지시의 상대방과 결과, 상대방의 의무 없는 행위 또는 권리행사 방해 여부를 해당 유죄 부분마다 구분해야 합니다. 항소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다른 공소사실을 유죄 판단의 근거처럼 혼용하지 않아 주십시오.

5. 상고이유서 확인 전 남겨 두어야 할 판단

현재는 실제 상고이유서와 항소심 판결문 전문을 확보하지 못해 구체적 파기사유가 무엇인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상고심에서 사실관계를 새로 인정해 달라는 식의 요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법률 해석이나 소송절차에 관해 법정 상고이유가 제출됐다면 그 쟁점의 정확한 범위와 판결에 미친 영향을 살펴 주십시오. 양측이 상고한 사건인 만큼 한쪽 주장만을 확정사실처럼 적시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6. 결어 및 제출 보류 사항

박성재 전 장관 사건에 관해 항소심이 판단한 유죄·무죄의 범위와 적용 법률을 판결문에 따라 신중하게 대조해 주시기를 탄원드립니다. 다만 이 문서의 대법원 사건번호·재판부·실제 상고이유는 미확인입니다. 이 문서는 현재 상태에서 발송하지 않고, 공식 접수·배당 확인과 판결문·상고이유서 대조를 마친 뒤 수신과 논증을 확정해야 합니다.

탄원인: _____ (서명 또는 인)

주소: _____

연락처: _____

박성재 | 참고자료 및 제출 전 확인

1. 실제 본문에 인용한 공개자료

[1] 연합뉴스, 박성재 항소심 선고 보도(2026.10.21)

[2] 뉴시스, 항소심 공소항목별 판단 보도(2026.10.21)

[3] 연합뉴스, 박성재·특검 쌍방 상고(2026.10.28)

[4] 형사소송법 제383조(상고이유)

[5] 형법 제87조(내란)

[6] 형법 제123조(직권남용)

[7] 뉴시스, 2026.10.28. 항소심 공소항목별 판단과 쌍방 상고

2. 사건기록과 직접 대조할 항목

- 항소심 판결문 전문·공소사실별 판단표
- 쌍방 상고이유서·대법원 접수 및 배당번호
- 형사소송법 제383조 각 호별 적용 여부